

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6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
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춘곤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
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
송경택, 유만희, 이종환,
최민규, 허 훈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조례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,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노동안전보건계획’을 ‘노동기본계획’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(안 제6조제5항 신설)
- 나. ‘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’를 ‘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’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(안 제12조제3항 신설)
- 다.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제4항 신설).
- 라. 위원회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 삭제 (종전 제14조~제21조)

마. 위원회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(안 제 14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의 보호위원회에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위원회 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) ① ~ ④ (생략) <신설></p>	<p>제6조(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</u></p>
<p>제12조(설치 및 기능) ①·② (생략) <신설></p>	<p>제12조(설치 및 기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노동기본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3조(구성) ① ~ ③ (생략) <신설></p>	<p>제13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<p>제14조(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 ② <u>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</u></p>	<p>제14조(위원회 운영세칙) <u>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노동기본조례」에 따른</u></p>

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16조(결격사유) ① 시장은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
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

다.

<삭 제>

<삭 제>

주 불참한 경우

4.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위원 해촉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(위원회 해촉 해제) 절차에 따른다.

제1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8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9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20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